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제출의무로 변경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49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31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제출의무로 변경	3
2.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6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049호)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131호)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049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131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제출의무로 변경(제2201049호)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일괄 변경함(안 제72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u>보고</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u>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u> 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u>제출</u>) ① ----- ----- - <u>지도·감독 결과의 제출</u> 을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u>제출</u>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	③ ----- ----- ----- -----

현행	개정안
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 <u>제출</u>-----.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는 ① 과기정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¹⁾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각각 공사업의 등록 현황²⁾과 사용전검사 현황³⁾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 1)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보다 덜 권위적인 용어인 ‘제출’ 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하부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제2201131호)

가. 개정안 요지

- 공사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함 (안 제7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u>	<u><삭 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78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한다. 1. ~ 3의2. (생략)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 9. (생략) ②·③ (생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⁴⁾,
-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② 공사업자인 법인 간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 ③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⁵⁾.

4)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 또한 동법은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와, 양도·합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속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으면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양도·합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상속 신고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개정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2023년 말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체 12,337개 사(社) 중 11,983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6)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사(97.1%)가 중소기업임.

-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양도·합병 신고는 공사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동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⁷⁾, 이는 공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가 양도·합병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양도·합병 신고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공사업을 허용하여 준다는 점에서 공사업의 등록과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합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등록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하향하는 경우 양도·합병 신고의 취지 및 의무위반 행위자 간의 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 한편, 공사업에 관한 유사 입법례에서 사업자 등록 및 양수·합병·상속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수·합병·상속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7)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고 있음⁸⁾).

- 「전기공사업법」은 등록의무 위반 및 양수·합병·상속 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양수·합병·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⁹⁾).

8)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9)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수·합병·상속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영세성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업계의 부담 정도, 양도·합병 신고를 둔 취지 및 등록의무 위반과의 형평성 문제,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